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1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0982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시 ○○군수
변 론 종 결	2023. 10. 12.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23.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2,000,000원, 지방교육세 3,400,000원, 농어촌특별세 8,500,000원, 합계 113,9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1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20. 4. 9.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1. 4. 15. B으로부터 ○○ ○○군 C 대 391㎡ 및 지상 단층주택 46.6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2021. 4. 26.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1. 4. 26.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취득가액 8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102,000,000원, 지방교육세 3,400,000원, 농어촌특별세 8,500,000원, 합계 113,9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9.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21. 4. 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6)(이하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가 적용되어 중과세 예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은 2021. 4. 27.부터 시행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2021. 4. 26.이므로,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1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1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이 시행되기 불과 하루 전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은 일반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시혜적 행정입법으로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택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4. 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 제8호 나.목(이하 '이 사건 종전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주택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자, 즉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중과세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지방세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1

시행령이 2021. 4. 27.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면서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에서 주택신축판매업자를 중과세 적용 예외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 이유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인데,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시행령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그 이전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또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법자의 의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며,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영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마196 결정 참조).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은 취득세 중과세 면제 특혜조항으로서 입법기관의 광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1

범위한 입법재량권 행사에 따라 소급입법을 제한한 것으로서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참조), 이 사건 종전 시행령 조항에서 주택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한하여 중과세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789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하여까지 중과세 배제규정을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반드시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다거나 일반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1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1

별지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4. 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1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부칙(2021. 4.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끝.